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창업도시 모집공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생태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창업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를 모집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개요 〉

- ◆ **(추진배경)** 국가 단위의 우수한 창업 생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 비수도권 간 창업 생태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 혁신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 기반 약화
 - **(추진목적)**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창업도시를 선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창업도시를 조성하여, 지역별 특색을 기반으로 한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 추진
 - **(정책목표)**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도시 5곳 이상 창출
- ◆ **(추진개요)** 중앙정부(중기부 등)에서 선정된 창업도시에 창업지원 역량(사업·예산)을 집중 공급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내 혁신자원을 집중하여 지역 특색 기반의 창업도시 조성 전략 추진

〈 창업도시의 개념 〉

창업 혁신자원(인재, 기술, 자본 등)이 집적되어, 창업 활동·성장이 지속되는 거점도시 기반 창업 생태계

- ① **(창업도시 지정)** 지역 창업 혁신자원(기술인재, 자본 등) 보유 수준, 창업 생태계 규모·성숙도·잠재력 등을 기반으로 창업도시를 조성할 광역자치단체(시·도) 선정
 - *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2028년까지 기본 지정기간을 부여하고, 별도 심의 후 2030년까지 추가 지정
 - ② **(지원역량 공급)** 중앙정부는 선정된 창업도시에 창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한 지역별 창업도시 조성전략 수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 역량(사업·예산)을 집중 공급
 - ③ **(추진전략 수립)**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공급한 자원(사업·예산)과 함께, 지역 내 자원(기관, 사업, 예산 등)을 투입하여, 지역 특색을 기반으로 한 창업도시 조성전략을 수립
 - ④ **(지역 생태계 육성)** 지방정부는 중앙·지방정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도시 조성전략을 추진하여, 지역 소재·이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 추진
- ◆ **(지정현황)** 과학기술원이 소재하여 기술인재가 지속 양성되는 4개 광역시 우선 지정 ('26년 4월)
- * ① 대구광역시, ② 대전광역시, ③ 울산광역시,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창업도시 모집공고 요약 〉

- **모집개요** : 4극 3특*을 기반으로 창업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광역 자치단체를 모집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 가능 지역을 선별

* 5극 3특 중 수도권은 제외하여, 4극 3특 내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 **신청대상** : 광역자치단체 10곳

- **신청요건**

구분		주요 내용
① 대표·협력도시	개요	· 권역 기초자치단체 중 대표·협력도시와 대표도시 내 중심구역 지정
	요건	· 대표도시 1곳과 중심구역 1곳 확보 (필요 시 협력도시 확보)
② 추진단 구성	개요	· 창업도시 조성을 추진할 지역별 추진단 구성
	요건	· 최소 15개 이상 (기본 5개 외 10개 주요 과업항목별 1개 이상)
③ 지방재원 확보	개요	· 지역이전 지원금, 엔젤투자허브 운영비 및 과업 재원 확보·투입
	요건	· 총 6.4억원 (지역이전 지원금 4억원, 엔젤투자허브 운영비 2.4억원)
④ 전담조직 확보	개요	· 운영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요건	· 운영기관 내 전담인력(참여율 100%) 7인 이상 확보

- **선정규모** : 광역자치단체 6곳

신청대상 (가나다 순)	선정(안)
· ¹⁾ 강원특별자치도, ²⁾ 경상남도, ³⁾ 경상북도, ⁴⁾ 부산광역시, ⁵⁾ 세종특별자치시, ⁶⁾ 전남광주통합특별시*, ⁷⁾ 전북특별자치도, ⁸⁾ 제주특별자치도, ⁹⁾ 충청남도, ¹⁰⁾ 충청북도	6곳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주광역시(북·동·서·남·광산구) 및 나주시를 제외한 지역을 창업도시(대표도시 등)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4년간, 600억원 내외의 직접 지원 예산 공급

* 연간 150억원 규모로, 창업기업 지원금 110억원, 프로그램 운영비 40억원 내외

** 기타 각 지역의 수요에 따라 중앙정부의 10여개 이상의 사업을 연계공급하여, 직접 지원과 연계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 예정 (지역별 최대지원 규모 상이)

- **신청기간** : '26년 10월 23일(금) ~ 11월 30일(월), 15:00까지

- **평가방법** : 2단계(서류평가→현장평가)의 평가를 통해 각 광역자치단체별 창업도시 조성 역량과 가능성을 비교 검증

- **주요일정(안)** : 모집공고(10월) → 접수마감(11월) → 서류·현장평가(12월) → 선정확정('27년 1월) 및 전략발표회 개최('27년 2월)

1

모집 개요

- **(모집내용)** 창업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를 모집하여, 지역특색 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지역 선별
- **세부대상** : 4극(충청·호남·대경·동남권)과 3특(강원·전북·제주) 내 10개 광역자치단체(시·도)를 대상으로 모집·선정
- **(모집유형)** 지역의 수요·특성에 따라, ¹⁾딥테크형과 ²⁾로컬x테크형 중 1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유형에 따른 평가트랙 구분 없음)

〈 창업도시 유형 현황 〉

구분	딥테크 창업도시			로컬 x 테크 창업도시		
개요	성장엔진과 연계한 딥테크 분야 중점 지원·육성			성장엔진과 연계한 딥테크 분야와 지역특색 기반 로컬 분야 통합 지원		
중점 분야	중점분야①	중점분야②	중점분야③	중점분야①	중점분야②	중점분야③
	성장엔진 연계	성장엔진 연계	성장엔진 연계	성장엔진 연계	성장엔진 연계	로컬창업 연계
	성장엔진 및 신산업(23개) 중심			성장엔진 및 신산업(23개), 로컬(7개) 통합		
예산 배분	공급 예산을 성장엔진(신산업) 중심으로 투입			공급 예산의 30% 내외는 로컬 분야에 투입		

* (로컬 7개 분야) ¹⁾지역가치, ²⁾로컬푸드, ³⁾지역기반제조, ⁴⁾지역특화관광, ⁵⁾거점 브랜드, ⁶⁾디지털문화체험, ⁷⁾자연친화활동 (단, 일반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 **(선정규모)** 광역자치단체 10곳 중 6곳

신청대상 (가나다 순)	선정(안)
· ¹⁾ 강원특별자치도, ²⁾ 경상남도, ³⁾ 경상북도, ⁴⁾ 부산광역시, ⁵⁾ 세종특별자치시, ⁶⁾ 전남광주통합특별시*, ⁷⁾ 전북특별자치도, ⁸⁾ 제주특별자치도, ⁹⁾ 충청남도, ¹⁰⁾ 충청북도	6곳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주광역시(¹⁾북구, ²⁾동구, ³⁾서구, ⁴⁾남구, ⁵⁾광산구), ⁶⁾나주시를 제외한 지역을 창업도시(대표·협력도시)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단, 신청·접수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후 필요 시 선정규모 변경 가능

- **(협약기간)** '28년 12월 29일(금)까지 (약 2년의 기본협약 기간 부여)

* 기본협약 종료('28년말) 후, 지역별 창업도시 조성의 실적, 성과 등 성과평가를 통해 협약연장(+2년, ~'30년 12월) 검토 (협약 연장 시, 최대 4년의 협약기간 부여)

〈 창업도시 신청요건 현황 〉

구분		주요 내용
① 대표·협력도시	개요	· 권역 기초자치단체 중 대표·협력도시와 대표도시 내 중심구역 지정
	요건	· 대표도시 1곳과 중심구역 1곳 확보 (필요 시 협력도시 확보)
② 추진단 구성	개요	· 창업도시 조성을 추진할 지역별 추진단 구성
	요건	· 최소 15개 이상 (기본 5개 외 10개 주요 과업항목별 1개 이상)
③ 지방재원 확보	개요	· 지역이전 지원금, 엔젤투자허브 운영비 및 과업 재원 확보·투입
	요건	· 총 6.4억원 (지역이전 지원금 4억원, 엔젤투자허브 운영비 2.4억원)
④ 전담조직 확보	개요	· 운영기관 내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요건	· 운영기관 내 전담인력(참여율 100%) 7인 이상 확보

① (대표·협력도시) 기초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권역 내 대표도시와 협력도시를 지정하여, 광역 창업거점 조성을 위한 체계 확보

- 필수/대표도시 : 광역 단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권역 내 혁신주체(창업기업, 투자사, 수요처 등)가 집적될 대표도시 1곳 지정

* 대표도시를 권역 내 창업도시로 간주 (예 충청북도 청주시,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등)

** 연접한 '시 단위'를 묶어 대표도시 지정 허용 (2개 시 이내, 연접한 경우에 한해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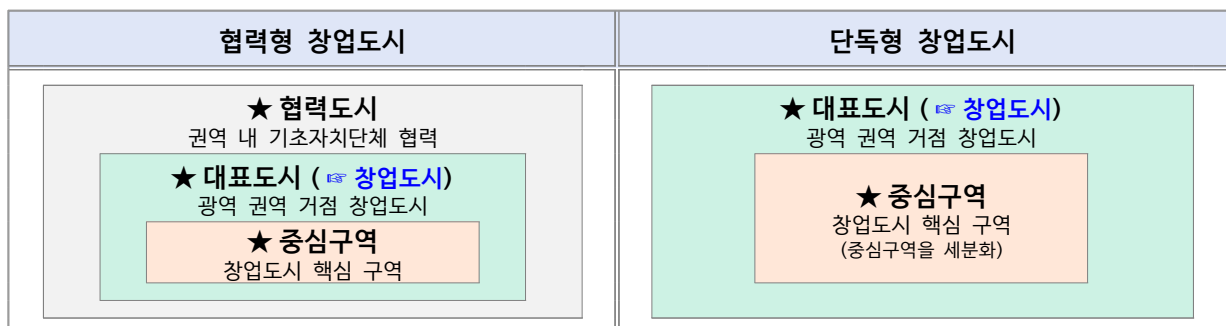
- (중심구역) 대표도시 전역을 창업도시로 조성하되, 창업지원 기능이 집중 운영될 중심구역 1곳 이상을 대표도시 내 설정

*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별도 대표도시 지정 없이 광역·특별자치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표도시(창업도시)로 간주하며, 중심구역만을 지정

- 자율/협력도시 : 권역 내 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협력도시 최대 2곳)를 구축하여, 창업도시 조성에 참여 가능

* 협력도시별 과업 참여 내용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율 설정

** 연접한 2개 '시'를 대표도시로 설정한 경우, 협력도시는 1곳 이내로 설정 가능



② **(추진단 구성)** 지역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주체를 추진단으로 구성하여, 지역 특화 창업성장 관련 전방위적 지원 연합체 확보

- **확보규모** : 기본 5개 기관, 10개 주요 과업항목별 1개 이상으로, **최소 15개 이상의 추진단** 확보 (광역자치단체*가 총괄 역할 수행)

*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추진단장 1인을 지정

** 주요 과업항목 중 추진단이 확보되지 않은 항목이 있을 경우 요건 불충족으로 간주

〈 창업도시별 추진단 구성 〉

구분	참여주체	주요 역할	비고
기 본	총괄	지방정부(광역)	창업도시 추진전략(방향·조직) 수립
	운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 현안 발굴, 중앙정부 정책 연계
		창업진흥원	지역 추진전략 수립, 운영 관리·감독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운영 (예산집행 등)
		지역 엔젤투자허브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자 율 확 보	사업 참여	지역 내 대학	우수 기술형 창업인재 발굴·육성
		지역 내외 연구기관	우수 기술 보유 창업인재 발굴·육성
			지역 특화 기술 실증·인증·평가 지원
		지역 내외 AI 연구기관	지역 기술 - AI 융합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유관기관	창업기업에 지역 안착형 사업화 지원
		지역 수요처	창업기업과의 개방형 혁신 추진
		지역 투자자	창업기업 투자 (TIPS 운영사 필수 포함)
		로컬 지원기관	로컬 강화 및 로컬 x 창업 협력 지원
		금융기관 지역본부	창업기업에 정부자금 외 금융 지원

* 지역별 추진전략에 따라, 항목별 참여주체를 확보 (**확보 규모 상한 없음**)

** 선정된 창업도시에 전문기관(창업진흥원) 임직원 파견(1~2인 내외) 예정

〈 창업도시 주요 과업항목 〉

구분	주요 지원방향
① 인재 발굴·양성	· 지역 내 기술창업 인재 발굴 및 우수 지역 창업가 전환 촉진
② 기술지원	· 창업기업 보유 원천기술의 개선·고도화를 통한 국내외 시장 내 기술우위 확보
③ 창업사업화	· 창업기업의 지역 기반 사업화를 촉진하여, 사업화 역량 강화 및 스케일업 촉진
④ 투자 지원	· 지역 투자 재원을 기반으로 지역 창업기업의 신규 성장동력 확보 촉진
⑤ 개방형 혁신	· 지역 수요처(대·중견·강소·중소·공공·로컬 등)와의 기술 교류·협력 촉진
⑥ 로컬 연계	· 지역 문제 해결 및 공공 데이터·인프라 활용 등을 통한 지역 거래·창업 활성화
⑦ 글로벌 진출	· 창업도시와 유사 중점분야를 육성하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창업인재·기업 교류
⑧ 네트워킹	·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역 내 혁신주체간 소통·교류
⑨ 주거 지원	· 창업도시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기업(대표자, 임직원) 대상 주거공간 제공
⑩ 규제 해소	·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관련 규제 발굴·해소

* 10개 항목은 기본(필수)사항이며, 지역별 판단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여 전략 수립

- ③ **(지방재원 확보)** 지역 이전 창업기업 지원금(의무)과 창업도시 조성 과업수행(선택)을 위한 지방재원(광역·기초자치단체 구분 없음)을 확보

〈 창업도시 조성 과업 관련 지방재원 구분 〉

유형	항목	투입내용	비고
① 창업기업	지원금 (현금)	· 지역 이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의 20% 지원	의무
② 엔젤투자허브		· 지역 엔젤투자허브의 연간 운영비(2.4억원) 지원	
③ 과업수행	1)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관 프로그램 운영예산 지원	선택
	2) 지역사업 연계	· 지역 창업지원사업의 전체 혹은 일부 연계	
	3) 주거공간 지원	· 지역 이전 창업기업 대상 주거공간 지원	

- ① **창업기업 지원금** : 중앙정부(중기부·창진원)에서 지역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역 소재·이전 창업기업에 지역사업화 자금 지급

*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지급하되, 자금을 지급할 대상(창업기업)은 지방정부에서 선정

- (의무사항) 지역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을 지원 받는 지역이전 창업기업의 자기부담사업비 중 20%를 지방정부에서 현금 보조

* 지역 소재 창업기업의 자기부담사업비는 의무사항에서 제외 (필요 시 지원 가능)

〈 지역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사업비 구성 예시 〉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		
	100%	70% 미만	30% 이상 소계	- 세부내역	
지역 성장	580,000,000원 -	400,000,000원 창업진흥원 지급	180,000,000원 창업기업 부담	180,000,000원 창업기업 부담	
지역 이전	580,000,000원	400,000,000원 창업진흥원 지급	180,000,000원 지방정부+창업기업	36,000,000원 지방정부 지급	144,000,000원 창업기업 부담
비고	현금 + 현물	현금	현금 + 현물	현금	현금 + 현물

- (확보규모) 선정된 창업도시에서는 연간 4억원* 내외의 지역 이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지원예산(현금)을 확보

〈 지역 이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지원예산 확보 규모 〉

구분	확보 규모	비고
창업도시	연간 4억원 내외	※ 창업도시별 '27년 창업기업 선정규모 미정으로, 각 창업도시에 추후 배정될 창업기업 선정규모에 따라 지원예산 변동 예정

* 창업기업 선정규모 최종 배정 시, 창업도시별 창업기업 지원예산은 하향 조정 예상

**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자기부담사업비의 20%를 초과하는 규모의 지원 가능

② **엔젤투자허브** : 창업도시 선정지역(대표·협력도시) 내 엔젤투자허브 구축 예정으로, 지방정부는 운영비 일부를 매년 지원

- (허브구축)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의 대표도시 내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신규 구축 (중앙-지방정부 협의를 통해 협력도시 내 설치 가능)

*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선정될 경우,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기 구축된 경산시(경북)와 창원시(경남)는 추가 구축이 불가하나, 대표·협력도시 내 타 도시에 신규 구축 가능

〈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 현황 〉

구분	위치	구분	위치
충청권	대전 팁스타운	동남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원)
호남권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경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

- (주요역할) 엔젤투자허브 운영기관에서 개인투자자 매칭, 엔젤투자펀드 등 지역 초기투자 기반 강화 추진

*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내 원활한 지역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도시 추진단에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포함하고, 필요 시 지역 엔젤투자허브에 대한 과업·예산을 부여

- (운영비 확보) 허브 1개소당 연간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하며, 중앙정부에서 3.6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2.4억원을 매칭

〈 지역 엔젤투자허브 연간 운영비 구성 〉

구분	매칭 비율	금액	비고
중앙정부	60%	3.6억원	· 매년 중앙정부(중기부)에서 운영비의 60% 지원
지방정부	40%	2.4억원	· 매년 지방정부에서 운영비의 40% 지원
합계	100%	6.0억원	-

*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엔젤투자허브에 대한 기본 운영비 지원(2.4억원) 외 추가 재원 투입을 통한 프로그램 확대·다변화 가능 (지방재원 투입분으로 전액 인정)

** 지방비는 국비와 합산한 총 사업비 범위에서 관계 법령·지침 및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집행 가능 (인건비, 투자자·기업 지원비, 사업 운영비 등)

- (투입시기)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27년 3월 내외에 신규 구축되며, 지방정부는 구축 완료 이전에 지방재원을 확보·투입

* 단,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지방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투입시기가 지연되거나 투입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가능

③ **과업수행** :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과업 수행 전반에 대해 광역 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대표·협력도시 등)의 지방재원을 투입

* ¹⁾프로그램 운영, ²⁾지역사업 연계, ³⁾주거공간 지원으로 유형을 분류하되, 지방정부의 수요에 따라 다른 유형의 활동에 대한 지방재원 투입 또한 인정

1) **프로그램 운영** : 중앙정부 재원을 통해 운영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해 지방재원을 보조하여 프로그램 규모·항목을 확대

- (인정기준) 지방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기관으로 예산을 지급하여, 운영기관이 집행하는 프로그램 비용에 한해 인정

2) **지역사업 연계** : 각 지방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창업지원사업을 창업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에 제공

- (인정기준) 지방정부별 창업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관련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창업도시 창업기업을 지원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지역사업 연계 관련 지방재원 투입 예시 〉

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별
기존 지방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선정대상 중 일부를 창업도시 참여 창업기업으로 설정	▶ 창업지원사업별 지원계획에 따라, 운영기관 추천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
· 예 연간 선정규모의 30%를 창업도시에 배정	▶ · 예 30%를 운영기관 추천을 통해 선정
· 예 연간 선정규모 전체를 창업도시에 배정	▶ · 예 창업도시 창업기업에 한해 모집 후 선정

3) **주거공간 지원** : 창업도시(대표도시)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대표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주거공간을 제공

- (인정기준) 지방정부, 운영기관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창업기업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주거공간에 한해 인정

* 예 중심구역 내 주거공간 10곳을 확보하여, 창업기업 신청 시 제공 권고

지역 교육·연수원, 대학 기숙사 일부를 확보하여, 창업기업 신청 시 제공 권고

**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의 신청대상 포함 및 우대조건 제공 또한 지방재원 투입으로 인정하되, 실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에 투입가능한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 과업 수행을 위한 지방재원 투입은 선택사항으로 요건 규모는 없으나, 지방재원 투입 규모에 대한 평가 시 가점 부여

☞ 각 항목별 지방재원 투입 계획(항목, 방법, 규모 등)을 사업계획서 내 기재하며,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가점 제외

- ④ **(전담조직)** 운영기관은 창업도시 과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최소 7인 이상의 전담인력(참여율 100%)을 확보·운영

〈 운영기관 전담인력 구성 〉

구분		주요 내용
조직 설치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대표이사 직속 창업도시 전담조직(본부·실·팀 등)을 설치
확보 규모	전담	· 참여율 100%의 전담인력을 최소 7인 이상 확보
	겸직	· 총괄책임자(본부장급 이상) 1인이 겸직 참여하며, 그 외 겸직 규모 제한 없음
업무구분		· ¹⁾ 창업기업 발굴·지원, ²⁾ 연계사업 관리, ³⁾ 사업비 관리로 구분하여 각 1인 이상 확보
고용형태		· 전담인력 7인 중 정규직을 최소 3인 이상 확보 (총괄책임자 제외)
근무경력		· 전담인력 7인 중 창업지원 경력 5년 이상인 인력을 최소 3인 이상 확보

- ① **조직설치**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창업도시 전담조직(형태 무관)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설치하며, 총괄책임자를 조직의 장으로 확보

- ② **확보규모** : 총괄책임자(본부장급 이상)는 겸직 참여를 허용하며, 전담인력(참여율 100%)은 최소 7인 이상을 확보

* 총괄책임자(겸직, 1인), 전담인력(7인) 외 겸직인력의 확보투입 규모에 제한 없으나,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운영기관 내 다수 겸직인력 확보 권고

☞ 예 투자팀(TIPS 등), 사업화 지원팀(예·초·도 등), 로컬지원팀(로컬크리에이터 등) 등

- ③ **업무구분** : 전담·겸직인력의 업무는 자율 구분하되, ¹⁾창업기업 발굴·지원, ²⁾연계사업 관리, ³⁾사업비 관리별 각 1인 이상 인력 투입

- ④ **형태·경력** : 전담인력(최소 7인 이상) 중 최소 3인 이상을 정규직으로, 최소 3인 이상을 창업지원 경력 5년 이상인 인력을 확보

* 가급적 정규직 인력 3인을 ¹⁾창업기업 발굴·지원, ²⁾연계사업 관리, ³⁾사업비 관리의 각 파트장으로 구성을 권고하나, 운영기관별 내부 상황에 따라 자율 확보·운영

※ **조직점검** : 전문기관에서는 운영기관의 전담조직 설치·확보 및 업무현황에 대한 별도 점검체계를 운영할 예정으로,

- 운영기관은 창업도시 과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치·확보 (총괄·전문기관 협의 등을 통한 기준 완화 불가)

* 예비·초기·도약 등 타 창업지원사업과 차별화되는 점검체계를 운영하며, 전담조직 관련 기준 미이행 사례 등이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조치를 통한 운영기관 변경 가능

** 운영기관에서 전담조직 설치·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은 창업도시 신청 불가

- ① **(직접지원)** 선정된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 대상의 지역창업패키지 사업을 공급하여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과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방정부별 연간 직접지원 규모(안) 〉

구분	지원 규모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110억원 내외 (100~120억원)
프로그램 운영비	40억원 내외 (30~50억원)
합계	150억원 내외 (130~170억원)

* 위 직접지원 규모(안)은 예시로, 매년 예산 확정 후 도시별 사업내용 등에 따라 조정 예정

- ① **창업기업** :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의 수요에 따라 지역 소재·이전 창업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창업기업에 지역사업화 자금 지원
- (선정방법)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별 배정된 규모에 따라, ¹⁾자율선정과 ²⁾공모선정으로 구분하여 창업기업을 선정

구분	주요 내용
자율선정	· 지방정부에 배정된 창업기업 선정규모 중 일부를 지역의 수요에 따라 창업기업을 선정 ☞ 예 지방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창업기업, TIPS 등 주요 창업지원사업 선정 창업기업, 지역 투자펀드에서 투자한 창업기업 대상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 등
공모선정	· 자율선정 이후 잔여된 창업기업 선정규모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대국민 모집공고를 통해,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창업기업 선정 ☞ 공모 시에도 평가분과 구성, 분과별 선정규모 등 지방정부가 평가를 자율 운영

- (지원규모) 지역에 소재하거나,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억원의 지역사업화 자금 지원

구분	지원대상	정부지원사업비 규모
지역 성장	· 대표·협력도시 내 본사가 소재한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신산업 · 최대 4억원 (평균 3.5억원)
		일반 · 최대 3억원 (평균 2.5억원)
지역 이전	· 대표·협력도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신산업 · 최대 6억원 (평균 5억원)
		일반 · 최대 5억원 (평균 4억원)

*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지원의 세부규모(금액, 기업 수, 지역별 차등 등)는 연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선정된 창업도시에 개별 안내 예정

- ② **운영기관** : 지역별 추진전략 관련 세부과업 수행(프로그램)을 위한 운영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 운영기관의 사업계획서는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에서 검토·승인하며, 운영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통해 추진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위탁 및 비용 지급 가능

② **(연계지원)**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창업·로컬지원사업을 각 지역에 공급하여, 지역별 창업 생태계와 정주 여건을 동시 강화

- **연계방안** : 각 연계사업별 창업도시 우대제도를 운영하며, 지역별 연계사업 관련 수요를 기반으로 각 사업에 대한 신청·유치 지원

〈 지방정부 대상 주요 연계사업 현황(예시) 〉

항목 (타 부처)		사업개요
기술 개발	TIPS 프로그램	· TIPS 운영사가 先투자한 창업기업에 R&D 자금 최대 8억원 지원 ☞ 예 TIPS 연계를 위한 Pre-TIPS 선정 시 창업도시 소재기업 우대
사업화	창업중심대학	· 지역 내, 대학발 창업기업에 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1.5억원 지원 ☞ 예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기업 선정 시, 창업도시 소재 기업 우대(가점 등)
투자	지역성장펀드	·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펀드 (모펀드) 조성 후 자펀드에 출자 ☞ 예 지역성장펀드 조성지역에 창업도시 특화펀드(자펀드) 조성
	엔젤투자허브	·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엔젤투자허브) 확대 ☞ 예 엔젤투자허브 신규 설치 시, 창업도시 내 설치 우선 검토
	KVIC 지역 투자센터	· 지역의 벤처·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한국벤처투자) 확대 ☞ 예 KVIC 지역 투자센터 신규 설치 시, 창업도시 내 설치 우선 검토
개방형 혁신	딥테크 밸류업	· 정부에서 선별한 우수 창업기업과 국내 대·중견기업의 협업 지원 ☞ 예 딥테크 밸류업 지원대상에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 포함
글로벌	글로벌 창업허브	· 우수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허브 (서울 흥대 인근) ☞ 예 창업도시 창업기업에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제공
로컬	원도심 RE:CORE (국토부, 문체부)	· 원도심 RE:CORE 사업에 창업도시 연계 시 가점(3점) 제공 ☞ RE:CORE 선정 시, 중기부 로컬 사업(로컬테마상권 등) 추가 우대
인프라	스타트업파크	· 지역 창업 혁신주체 간 소통·교류를 위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구축 ☞ 예 신규 스타트업파크 선정 시, 창업도시 우대
	창업자 마을 (재경부)	· 재경부 국유재산을 활용한 창업공간(창업자 마을 등) 조성 지원 ☞ 예 창업자 마을 공급 및 주거공간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규제	규제자유특구	· 신산업 규제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규제특례 실증을 실시 하고 임시허가 부여 및 규제 정비를 촉진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 예 창업도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후보과제를 신청 시 우대(가점 2%)
네트워킹	지역창업 페스티벌	· 창업 혁신주체의 소통·교류를 위한 페스티벌 개최 ☞ 창업도시에 지역창업 페스티벌 개최비용(3억원 내외) 지원 예정

* 연계사업 목록은 예산 편성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연계 사업별 연계 방안 및 규모는 당해연도 사업별 사업계획 확정 시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

☞ **각 연계사업별 세부 연계방안(우대제도 등) 및 규모는 선정된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①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는 창업도시 조성의 총괄로서, 창업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체계의 구성 및 참여기관 과업을 관리
- ① **추진전략 수립** : 지역별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컨셉·슬로건, 추진 목표, 중점분야, 중심구역 등 창업도시 조성 전략(방향) 수립
 - ② **사업계획 승인·관리** : 운영기관에 추진전략 기반 연간 사업계획 수립방향을 안내하고, 운영기관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검토·승인
* 사업계획의 최초 검토·승인 이후 연간 사업계획 수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
 - ③ **추진단 구성·관리** : 지역 창업기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지역 대학, 연구기관, 투자사 등 과업에 참여할 지역기관 구성·관리
- ② **(운영기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도시 조성 과업 전반의 운영기관으로, 세부계획 수립·운영 및 창업기업 선정·관리
- ① **사업계획 수립·운영** :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의 추진전략 실현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추진단 등 세부과업을 총괄 관리
* 연간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정부지원사업비(운영비)를 집행하며, 지방정부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계획은 불인정 (반드시 지방정부 승인 이후 사업계획 확정·수행)
 - ② **창업기업 지원·관리** : 지역 소재·이전 (예비)창업기업의 발굴(창업기업 Pool) 및 자금을 지원할 창업기업 모집·선정·관리
 - ③ **중앙정부 대응** : 총괄·전문기관에서 사업운영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대응 (중앙정부는 운영기관을 통해 주요 사항을 안내)
- ③ **(추진단)** 추진단은 창업도시 조성의 핵심적 참여기관으로, 기관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창업도시 조성 전략을 위한 개별 역할 수행
- * 예 대학 : 교원·학생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준비·실행 교육
연구기관 : 중점분야별 창업기업 보유 기술의 시험·실증·평가 등 기술 지원 등
- ☞ 과업 세부사항은 「별첨5.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고

- **(평가절차)** 2단계(서류평가→현장평가)의 평가를 통해 사업에 신청한 광역자치단체별 창업도시 조성 역량과 가능성을 비교 검증

〈 창업도시 신규 선정평가 절차 〉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현장평가		심의·확정
제출서류 기반 역량 비교 및 착안사항 발굴	▶	평가단의 각 지역 방문을 통한 광역자치단체별 발표 및 현장 실사	▶	평가 과정·결과의 심의 및 선정 확정

- ① **서류평가** : 각 광역자치단체의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등)를 기반으로, 지역 간 역량을 비교하고 현장검증을 위한 착안사항을 중점 발굴

* 서류평가를 통해 평가단의 사업계획서 숙지 및 타 지역 비교를 통한 현장 확인 필요 사항(착안사항)을 발굴할 예정으로, 서류평가를 통한 별도 탈락 없이 사업에 신청한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검증 시행

- ② **현장평가** : 평가단의 각 지역 방문을 통해, 광역자치단체별 발표, 질의응답 후 주요 현장(핵심구역, 추진단 시설 등)을 실사

- (운영방법) ‘현장평가 계획 수립 개요(14P)’에 따라, 지역별 현장 평가의 평가일, 장소와 세부일정을 수립하여 사전 제출

〈 현장평가 세부일정 (예시) 〉

일정		추진사항	광역자치단체의 준비사항
10:45 ~ 11:00	15분	사전안내	· 발표평가 장소 설정 및 평가 준비
11:00 ~ 11:50	50분	발표평가	
11:50 ~ 13:00	-	중식	· 평가단은 별도 장소에서 중식 예정
13:00 ~ 15:00	120분	현장실사	· 현장실사 지역, 장소 등 일정, 동선계획 수립

- (발표평가) 지역별 50분 내에서 발표평가를 시행하며, 광역자치단체의 발표 후 평가단 질의응답 시행

* 발표(발표자 최대 2인)는 최대 20분 내로 진행하며, 발표 종료 후 총 시간 50분 내에서 질의응답 진행

- (현장실사)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추진전략 관련 대표도시 내 핵심구역, 추진단(기관) 시설 등에 평가단 방문 및 실사

* 평가단이 방문할 구역, 장소 등 전체 일정·동선계획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하며, 평가단은 광역자치단체가 설정한 일정에 따라 별도 차량(미니버스 등)으로 이동

〈 현장평가 계획 수립 개요 〉

◆ (수립개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추진전략과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의 역량, 가능성을 평가단에게 가장 효과·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평가 장소, 동선, 일정 등 계획을 수립

◆ (수립내용) ¹⁾평가일, ²⁾발표평가 장소, ³⁾현장실사 지역·기관, ⁴⁾이동동선 계획 수립

1) 평가일 : 대상별 정해진 기간 내에서 4지망까지 현장평가 희망일을 지정

신청대상 (가나다 순)	평가기간	비고
· ¹⁾ 강원특별자치도, ²⁾ 경상남도, ³⁾ 경상북도, ⁴⁾ 부산광역시, ⁵⁾ 세종특별자치시, ⁶⁾ 전남광주통합특별시, ⁷⁾ 전북특별자치도, ⁸⁾ 제주특별자치도, ⁹⁾ 충청남도, ¹⁰⁾ 충청북도	'26년 12월 14일 ~ '26년 12월 31일	평가기간 내 평가희망일을 4개 이내 지정

2) 발표평가 장소 : 대표도시 또는 협력도시 내 발표평가를 위한 장소를 확보하고, 스크린, 음향, 평가단(8인)의 책상과 좌석, 배석자 좌석* 등 평가를 위한 환경을 조성

* 지역별 배석자는 8인으로 제한하며, 중앙정부(최대 4인)의 배석 좌석을 함께 마련

3) 현장실사 장소 : 지역별 현장실사 장소를 2곳 이내로 설정하며, 현장실사 장소 내에서의 현장 설명자(1인) 지정, 현장실사 장소 내 세부 이동동선 계획을 수립 (총 2시간 이내)

* 현장실사 장소는 제한 없으며, 추진전략 관련 연관성과 중요도가 높은 장소를 지역별 자율 설정

** 현장실사 장소별 현장 설명자는 장소마다 변경 가능

*** 가급적 대학, 연구기관 등 핵심 참여기관(추진단)을 위주로 방문하며, 필요 시 야외 실사도 가능

4) 세부동선 : 현장실사 장소 내 동선과 현장실사 장소 간 이동 동선 계획을 수립

◆ (제출방법) 「별첨4. 창업도시 평가계획서」 작성 후 사업 신청 전 이메일 제출 (지방정부 공문 첨부)

○ (제출처) K-StartupCity@kised.or.kr (044-410-1890, 창업진흥원 김민영 주임)

○ (제출기한) 2026년 11월 4일(수), 15:00까지 제출 ※ 미제출 시 평가일정 임의 지정

◆ 유의사항

○ 현장평가 계획은 제출 후 전문기관(창업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1회 이내에서 변경 가능

○ 동일한 평가일을 지정한 광역자치단체 발생 시, 이메일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권 부여

* 지역별 현장평가일은 신청·접수 완료 후 창업진흥원에서 각 지역에 별도 안내

○ 현장실사 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 첫 번째 장소 내 실사 시간, 두 번째 실사 장소 이동시간, 두 번째 장소 내 실사 시간의 2시간 초과 불가 (2시간 초과 시 즉시 평가 종료)

* 평가단은 13시까지 첫 번째 평가장소에 도착 예정이며, 평가단의 첫 번째 평가장소 도착 시간으로 부터 2시간 내 현장실사 종료 필요

③ 심의·확정 : 평가 과정의 공정·타당성 여부 검증 및 평가 결과를 기초자료로 한 최종 심의를 통해, 창업도시 선정을 확정

* 평가결과에 대한 별도 이의신청·심의는 진행하지 않음

** 심의 과정에서 선정대상임에도 창업도시 조성 역량이 부족한 지역이 확인되거나, 탈락대상임에도 창업도시 조성 역량이 우수한 지역이 있을 경우 선정규모 조정 가능

- **(평가항목)** 창업도시 검증지표를 기반으로 지역별 창업도시 조성 역량, 가능성을 정량·정성으로 구분하여 비교·검증

〈 '26년 창업도시 검증 세부지표(안) 〉

구분	7대 검증항목	세부항목	20개 세부검증지표				배점
평가 사항	창업성장 지원여건	창업성장	정량	① 최근 3년 신규 창업 규모 및 지역 정착 비중			3점
			정성	② 지역 사업화 측면의 성장 지원 계획의 구체성			12점
		전문가 확보 규모	정량	③ 창업도시 참여 기술·사업화 전문가 확보 규모			2점
			정성	④ 수요 기반 전문가 확보·지원 방안의 구체성			2점
	금융지원 여건 및 활성화 수준	금융	정량	⑤ 최근 3년 지역 투자자의 지역 투자 규모			2점
			정성	⑥ 투자지원 및 지역 투자 활성화 계획의 우수성			6점
	특화산업 창업역량	기술 제품화	정량	⑦ 특화산업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 비중·생존율			2점
			정성	⑧ 특화산업형 신규 창업·성장지원 방안의 구체성			11점
	지방정부의 의지·방향	자원 투입	정량	⑨ 지역 자원(예산·프로그램) 투입 규모			5점
			정성	⑩ 지역 자원의 중장기 확보 계획의 실현 가능성			10점
		조직 구성	정량	⑪ 창업도시 추진단 참여기관(업) 규모			2점
			정성	⑫ 창업도시 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타당성			10점
	대·중견 협업 활성화 수준	개방형 혁신	정량	⑬ 지역 내 개방형 혁신(대·중견·공공) 지원 규모			2점
			정성	⑭ 수요기업 협력·교류 지원 계획의 구체성			4점
	기술인재 창업 여건	기술 인력 수급	정량	⑮ 지역 연구기관(대학·연구소) 연구자 창업 규모			3점
			정성	⑯ 기술인재 확보·수급 방안의 실현 가능성			11점
	창업거점 조성 환경	거점 조성	정량	⑰ 창업도시 거점 조성을 위한 공간 확보 규모			2점
			정성	⑱ 창업거점 조성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5점
		주거 환경	정량	⑲ 신규·이전 기업 주거지원 계획(공간) 규모			2점
			정성	⑳ 창업기업 수요 기반 주거지원 계획의 실효성			4점
	소계						
우대 사항 (가점)	-	-	· 중앙정부 정책(사업) 연계 규모				5점
			· 권역 외 지역 협력을 통한 예산 투입 규모				3점
			· 권역 외 지역 협력을 통한 인프라 연계 규모				2점
	소계 (최대)						
총계 (최대)							105점

* 다수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최대 5점으로 가점 제한

〈 현장평가 계획 수립 개요 〉

◆ **(정량평가)**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에서 세부검증지표별 정량수치와 증빙을 제출*하고, 경쟁 지역 간 규모를 비교**하여 점수 배정 (전체 배점의 25%)

* 「별첨4. 창업도시 평가계획서」 내 「2 정량 규모 현황」에 기재

** 예 배점 5점일 경우 1위 5점, 2위 3점, 3위 2점, 그 외 1점 및 최하위권은 0점

◆ **(정성평가)** 사업계획서, 현장실사(발표·질의응답 등)를 기반으로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별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등 비교 (전체 배점의 75%)

◆ **(우대·가점)** 중앙정부 정책(사업)을 과업에 투입(연계)하거나, 권역 외 지역 협력을 통한 인프라, 예산 투입 규모를 비교하여 가점 부여 (최대 5점, 정량평가와 점수 배정 방안 동일)

□ **(신청기간)** '26년 10월 23일(금) ~ 11월 30일(월), 15:00까지

* 신청기간 종료 후 별도 신청유예시간 없으며, 신청기간 내 '제출완료'(접수증 발급)되지 않은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¹⁾사업신청서(온라인), ²⁾공문(광역자치단체), ³⁾지방정부 추진 전략(HWP), ⁴⁾사업계획서(HWP), ⁵⁾증빙자료(HWP), ⁶⁾평가계획서(HWP)

〈 제출서류 현황 〉

구분			제출 방법		비고
사업신청서			별도 파일 제출 없음		온라인 입력
공문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의 사업신청 공문 첨부		온라인 신청 절차 내 온라인 업로드 (온라인 신청 최종 단계)
지방정부 추진전략			[별첨1] 양식(HWP) 내 기재 (작성항목 준수)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별첨2] 양식(HWP) 내 기재 (작성항목 준수)		
증 빙 자 료	요 건	대표·협력	대표·협력도시 확보 관련 증빙(자율)	증빙서류 양식 내 첨부 (별첨3)	
		지방재원	지방재원 확보 관련 증빙(자율)		
		전담조직	재직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기타 사항		추진단 확보 등 사업계획서 내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빙(자율)		
평가계획서			[별첨4] 양식(HWP) 내 기재 (작성항목 준수)		별도·사전 제출

* 자율 첨부하는 증빙은 공적 효력이 있는 서류에 한해 인정

** 업로드하는 파일의 용량은 100MB 이하로 하며, 증빙 미제출 시 평가·가점 제외 가능

*** 기타 지역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 자율 첨부 (증빙 첨부 제한 없음)

□ **(신청방법)** K-스타트업 온라인 신청 (별첨된 신청·접수 매뉴얼 참고)

◆ 온라인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접수 마감일 2~3일 이전에 운영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총괄책임자(본부장급)의 K-스타트업 회원가입 및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등의 사전 진행 권고 (제출완료 후 접수마감 전까지 상시 수정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운영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행하며, 신청서류 업로드 시, 반드시 신청 공문은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 명의의 공문을 첨부**

◆ K-스타트업 내 사업 신청 페이지는 신청대상(10개 광역자치단체)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한해 접속 가능하며, 별첨된 신청·접수 매뉴얼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 신청

* 사업 신청 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기관(창업진흥원)에 사전 문의

◆ 운영기관은 총괄책임자(본부장급)의 계정으로 사업에 신청

◆ K-스타트업 신규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하며,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 이전 SIREN24를 통한 실명등록 및 적용 요청 필요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 내외 소요)

□ 신청 시 유의사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신청하는 경우, 기존 광주광역시(북구,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와 나주시를 제외한 지역 내 대표도시(창업도시)와 중심구역, 협력도시를 조성·확보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운영기관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
 -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 광주광역시, 나주시를 담당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판단에 따라 1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통합 운영 검토 가능 (중앙정부 협의 필요)
- 사업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운영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총괄 책임자(본부장급 이상)의 K-스타트업 계정으로 진행
- 사업 온라인 신청 시, ‘제출공문’은 사업에 신청하는 지방정부(광역시자치단체)의 사업 신청 공문으로 제출하며, 지방정부(광역시자치단체)의 공문이 누락된 경우 접수 취소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대상(광역시자치단체, 운영기관)에서 공고문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운영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가 지방정부(광역시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며, 추후 확인 시에도 선정·협약 취소 가능
- 신청요건 관련 증빙을 누락한 경우, 접수 취소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점 관련 증빙을 누락한 경우 가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요건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창업진흥원)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에 불응하거나 기타 문제사항이 발생될 경우 접수 취소 및 평가대상 및 가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 유예시간은 없으며,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접수증 발급)된 지방정부(광역시자치단체)를 평가대상으로 간주
- 신청서류는 ‘제출완료’ 시에도 신청 기간 종료 시까지 수정·변경 가능하나,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변경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사업에 신청한 모든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시행 예정으로, 서류평가 결과에 관계 없이 현장평가의 사전 준비 권고
- 지방정부에서 사전 제출한 평가계획서를 기반으로 현장평가일을 배정하며,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는 최대 4순위까지 희망 평가일을 평가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
- 2개 이상의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가 동일한 현장평가일을 희망할 경우, 이메일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평가계획서를 제출한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의 수요를 기준으로 평가일을 우선 배정
 - * 제출 시점이 늦은 지방정부의 경우, 4지망 외 일정을 현장평가일로 임의 지정 가능
- 현장평가 관련 발표평가의 발표자, 현장실사의 현장 안내자는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에서 자율 지정하나, 발표평가의 발표자의 경우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에 소속되지 않은 인력이 진행할 경우, 평가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
 - * 발표평가의 발표자는 지방정부, 운영기관 담당인력으로 한정하며, 최대 2인으로 구성
(예 전반적 추진전략 - 지방정부 담당자 → 창업지원 세부방안 - 운영기관 담당자)
- 발표시간은 최대 20분 이내이며, 발표를 20분 미만으로 진행할 경우, 총 발표평가 시간(50분) 내에서 잔여 시간을 질의응답으로 활용 가능 (발표시간은 20분 초과 불가)
- 발표평가를 위한 발표자료는 현장평가일까지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에서 자율 제작하나, 사업계획서 내 작성항목 중 누락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
- 전문기관(창업진흥원)에서 배정한 현장평가일은 변경 불가
- 발표평가 시에는 8인으로 배석자를 제한하며, 발표평가장 내 평가단(8인)의 좌석과 중앙정부(최대 4인)의 좌석을 함께 마련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된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 운영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 운영기관의 안내사항을 준수하며, 미숙지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선정 이후라도 신청자격·요건의 불충족 사항이나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의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의 취소, 정부지원사업비의 환수 및 참여제한(운영기관) 등의 제재 가능
- 운영기관은 지방정부의 추진전략에 기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득하며,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한해 운영기관에 지급된 정부지원사업비 집행 가능
 - *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에서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정부지원사업비 집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사업비는 환수 처리하며, 운영기관에 대한 제재(참여제한 등) 부여
-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 운영기관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추진전략,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재원을 투입·집행하며, 지방재원을 투입하지 않은 경우 요건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협약 중단·취소 가능
-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창업진흥원)의 점검*(수시·최종 등) 결과에 따라, 협약 중단,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 제재 가능
 - * 창업도시 대상 점검 시, 지방청의 의견(점검 필요 사항)을 사전 확인하고,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과 전문기관(창업진흥원)에서 중간·수시·최종점검 시행 예정
- 사업 선정 이후, 운영기관이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창업진흥원)으로부터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과 전문기관(창업진흥원),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해 운영기관 변경 가능
- 운영기관에 대해 정부지원사업비 횡령·편취, 용도 외 집행 등으로 인한 환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조치 가능

□ 추진일정(안)

항목	주요내용	일정(안)
모집공고	· 창업도시 신규 지정을 위해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K-스타트업 누리집 내 모집공고 게시	10월 23일
▼		
사업설명회	·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 있는 지방정부, 운영기관 및 추진단 대상 전국 통합 사업설명회 개최	10월 28일
▼		
지방정부 접수 마감	· 창업도시 참여 희망 지방정부별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11월 30일
▼		
서류 검증	· 지방정부에서 제출한 추진전략,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류를 통한 비교·검증(평가) 시행	12월
▼		
현장 검증	· 창업도시 참여 희망 지방정부 전체에 대해 현장 검증을 시행하여, 현장확인을 통한 비교·검증(평가) 시행	12월
▼		
선정확정	· 지방정부별 서류·현장 검증 결과에 대한 종합 심의를 통해, 신규 창업도시 선정 확정	1월
▼		
전략 발표회 개최	· 신규 지정된 창업도시별 추진전략 발표회를 개최 (기존 4개 창업도시의 연간 성과 발표 병행)	2월

* 창업도시 모집·평가 등 추진현황에 따른 일정 변동 가능

** 전략발표회는 신규 선정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추후 별도 안내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신청 문의 : 전문기관(창업진흥원)

구분	소속	담당자	문의처
총괄	창업진흥원 지역창업확산TF	주동훈 팀장	044-410-1925
선정평가	창업진흥원 지역창업확산TF	구보창 대리	044-410-1889
사업기획	창업진흥원 지역창업확산TF	곽혜미 대리	044-410-1892
평가계획서 접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확산TF	김민영 주임	044-410-1890